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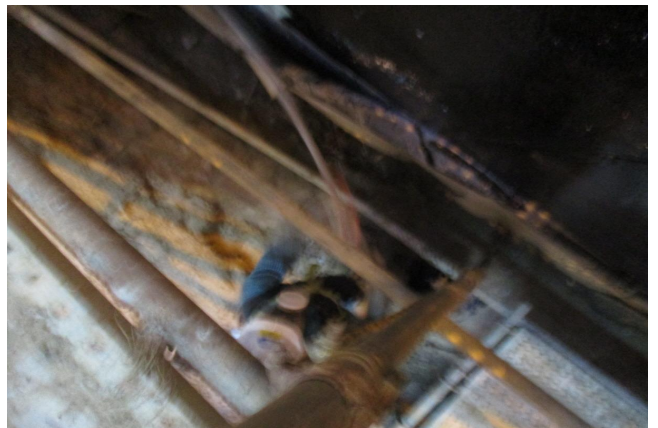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## [하남선(5호선연장) 1-1공구 건설공사]

- 점검일시 : 2021.10.13 (수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정달영

### 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도시철도토목부)

- 작업구 상부가 개방되어 있고, 수시로 자재를 내리는 곳이며
  - 그 하부 경사로에서는 작업자가 작업중으로 신호체계 보완 및 하부작업자가 낙하구역임을 인지하도록 관리 요함.
  - 방수작업자가 상하동시작업을 수행중이니 낙하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요함.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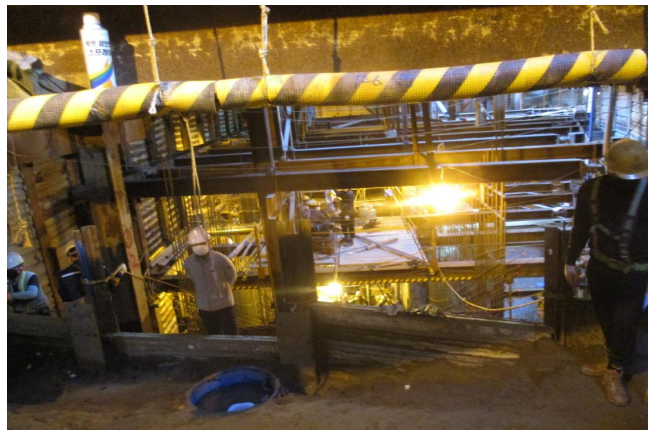
○ 가설비계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

- EL Pit 작업용 비계 난간이 지주가 설치되지 않아 지주간 간격이 길고
  - 철선묶기는 금지하고 전용철물 사용하여 고정하고
  - 측면의 브라켓발판은 발빠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 디딤면을 충분히 넓게 만들기 바람.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  
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가설비계-2(강관비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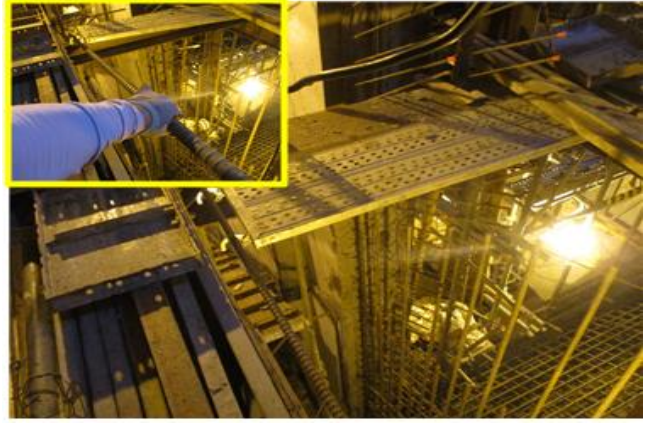

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

- 에스컬레이터 경사면 최상단과 토사면과의 이동통로가 토사면에서 경사면으로 이동시 높이차이로 인하여 전도 등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으니 보완 요함. 전도재해 발생시 경사면을 구르기 때문에 위험요인이 높음.
- 철근공 자재 적치 등을 위해 설치한 비계위로 가는 발판이 고정이 안되어 있으니 고정하고



- 그 측면은 철근이 수직으로 조립되어 찢림재해 등의 위험이 있으니 막거나 이동중 전도시 2차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조치 요하며
  - 통로에 자재 적치 등을 통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 요함.
  - 수직사다리 상부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 조치하고
  - 경사로 단부 상단 및 최하단은 이동시 추락, 전도 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행방법의 안전성 확보 요함.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도시철도토목부)

- 경사면 측면 및 통로로 이용되는 측면부의 난간이 pp로프이고 생명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
  - 지주에 의한 불연속으로 안전대고리 체결에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안전대고리 체결 및 이동에 주의하도록 교육관리 요함.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